

장기화재보험 분쟁

—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자의 과실여부—

1. 사건 개요

경기도 광주시에서 펠트(보온 덮개)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K는 1985년 1월 공장 건물, 동 건물 내의 수용동산 및 기계를 보험의 목적으로 H보험회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동 계약이 종료되는 1986년 1월 H보험회사에 장기화재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였으나 H보험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실사 후 장기화재보험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고 일반화재보험계약을 권유한 바 있다. 동 사의 장기화재보험 인수거절사유는 보험의 목적중 일 부건물이 청약서에 기재된 블록 조 슬레이트층이 아니라 가연성 재료인 철파이프 루핑층이라는 사실과 동산의 초과보험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실사보고서에 나타나 있다.

그후 K는 상기 보험의 목적에 대해 Y보험회사와 장기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보험의 목적이 H보험회사측으로부터는 인수거절된 바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Y보험회사측에서는 H사의 인수거절 사실을 확인한다거나 해당 물건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은 채 ①철골 슬레이트층 평가건 1동 100평, 기계 및 시설 일체, 원자재 및 반·완제품 일



이 헤 구
(한국보험공사 조정과장)

체 보험금액 1억 3천만원 ②블록조 슬레이트층 평가건 1동 50평, 기계시설 일체, 원·부자재 및 완·반제품 일체 보험금액 2천만원, 보험기간 '86. 1. 21~'91. 1. 21.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 계약을 인수하였다.

1986. 4. 8. 12: 20경 동 펠트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의 목적 대부분이 소실되었다. 경찰은 화재원인을 공장측이 임의로 가설한 건물내 형광등 배선에서 합선이 일어나며 튀 불꽃이 먼지층에 비화된 것으로 추정 하였으며, K는 Y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.

Y사에서는 이재조사 후, 계약자 K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이유로 동 계약을 상법 제651조 및 해당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Y사가 주장하는 고지

의무위반 사실이란 계약자 K가 계약 당시 일부 건물의 지붕이 가연성재료로 된 철파이프조 루핑층이었음에도 이를 블록조 슬레이트층 건물이라고 부실 고지하였다는 것이었다.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 K는 Y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동 보험계약의 해지가 부당함을 진정, 동 건물은 손해보험분쟁심의회에 상정 되었다.

2. 당사자 쟁점

보험계약자 K는 Y사와 보험계약 당시 H사로부터 인수 거절된 바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Y사가 아무런 확인 절차나 실사를 하지 않고 보험계약에 응하였으므로 Y사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데 반해, Y사는 보험계약자 K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분명하므로 Y사의 면책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. 즉 H사에서 장기화재보험계약의 인수를 거절한 것은 ①H사의 장기 화재보험계약 인수지침에 펠트제조업이 화재 위험성이 있어 자체적으로 인수를 제한한 것이며 인수거절사유가 단순히 보험의 목적이 가연성지붕(천막)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는 아니라는 점 ②각사의 인수지침은 각 보험회사의 위험선별에 따른 견해와 회사의 경

영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각각의 보험의 목적에 대해 반드시 실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③계약 이후 사고직전까지도 사실과 상위한 증권내용에 대해 보험 계약자의 정정 의사표시가 없었음은 보험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보험계약상의 중요한 고지사항을 은폐하고자 한 것이 분명하므로 Y사의 해지사유는 정당한 것이었고 따라서 상법 655조(계약해지와 보험금액 청구권)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.

3. 판정요지

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의 피신청인인 Y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다. 동 위원회의 판정요지는 아래와 같다.

「…… 본건 보험계약자 K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, 피신청인 Y사의 영업소장에게 장기 화재보험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K는 펠트제조공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점, 또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H사의 장기화재 보험으로부터 인수거절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바 있고,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등 위험사정을 함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인 피신청인이 계약자인 신청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받은 이상 동업 타사인 H사에 인수거절사유를 확인한 다거나 보험의 목적에 대한 실사를 하는 등 위험의 인수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신청인

이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주의를 해태하여 실제 위험상황을 알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…… (중략)… 따라서 피신청인은 상법 제 651조 단서규정 및 해당 약관 제 11조 제 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고 기 조치한 해지행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.

4. 결과

손해보험분쟁심의위원회의 지급판정에 대해 Y사는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동 재심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Y사는 1986. 7. 30 보험계약자 K에게 보험금 90, 689, 977원을 지급하였다.

5. 후설

상법 제 651조(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)는 「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,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」라고 규정하고 있고, 이러한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금을 지

급할 책임이 없다고 상법 제 655조는 규정하고 있다.

본건과 관련된 분쟁심의위원회의 판정을 보면 동 위원회가 상법 제 651조의 규정을 보험 계약자의 일방적인 의무규정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쌍방 의무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은다. 즉 동 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법 제 651조 단서 규정으로 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보험자가 전적으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내용에만 의존하여 위험의 인수여부 등 위험사정을 할 것이 아니라 위험추정에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또 그 조사를 함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본건은 표면상 고지의무위반이 문제시된 건이지만 위험의 선택과 실손보상이라는 손해보험회사 본래의 기능보다도 외형확대위주의 경영정책이 지배되고 있는 우리나라 손해보험업계의 일단면을 보여준 건이라고 할 수 있다. 보험에 있어서의 분쟁이 적정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없을 수 없겠으나, 반면 보험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보험 자체에 대한 이미지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의 위험상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세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 